|  |  |  |
| --- | --- | --- |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공업•무역업계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 판정기준 (2017년 버전)>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안감총관사[2017]12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안전생산감독관리국, 유관 중앙기업 :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공업•무역업계 중대 생산안전사고 리스크를 정확하게 판정하고 적시 제거하며 중대•특대 생산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생산법> 및 <중공중앙•국무원의 안전생산 분야 개혁•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여 <공업•무역업계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 판정기준(2017년 버전)>(이하 '<판정기준>'으로 약칭)을 제정하여 인쇄발부하는 바이며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각 성급 안전감독관리국은 지체없이 이 통지의 요구사항을 관할구역 내 각급 안전감독관리부서에 전달하여야 하며 유관 중앙기업은 지체없이 이 통지의 요구사항을 산하 생산경영업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각급 안전감독관리부서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판정기준>을 법 집행 검사의 중요한 의거로 삼아 법 집행 검사를 강화하고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 관리 독촉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여야 하며 생산경영업체가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을 지체없이 제거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2017년 11월 30일  공업•무역업계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 판정기준  (2017년 버전)  공업•무역업계 중대 생산안전사고 잠재위험성(이하 '중대사고 잠재위험성'으로 약칭) 판정은 이 판정기준을 적용받는다. 위험화학품, 소방(화재), 특종설비 등 관련 업종 분야의 중대사고 잠재위험성 판정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업•무역업계 중대사고 잠재위험성은 공통 중대사고 잠재위험성 및 업종별 중대사고 잠재위험성으로 구분한다. 공통 중대사고 자재위험성은 관련 공업•무역업계 전체에 적용되며 업종별 중대사고 잠재위험성은 해당 업종에만 적용된다.  1. 특별 중대사고 잠재위험성  (1) 분진폭발 위험성이 존재하는 업종 분야.  ① 분진폭발 위험성이 있는 장소가 비(非) 가구식(架構式) 구조의 다층 건축물•구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거주지역•직원숙소•회의실 등 인원 밀집장소와의 안전거리가 부족한 경우.  ② 가연성 분진과 가연성 기체 등 폭발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매개물이 동일 제진 시스템을 공용하고 서로 다른 방화구역의 제진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③ 건식(乾式) 제진 시스템에 폭발 배출•격리•둔화•억제 등 임의 일종의 폭발 통제 조치가 귀범적으로 취해져 있지 아니할 경우.  ④ 분진 정압취송(正壓吹送) 방식을 취한 제진 시스템에 신뢰가능한 점화원(點火源) 방비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아니할 경우.  ⑤ 제진 시스템이 집진실 방식으로 분진을 제거하거나 건식(乾式) 갱도식 구축물을 제진 통풍로로 사용하는 경우.  ⑥ 알루미늄•마그네슘 등 금속분진 및 목재분진을 제거하는 건식(乾式) 제진 시스템에 기갑•분진유출 장치가 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⑦ 분진 폭발 위험성이 있는 장소의 20구역에서 방폭 전기 설비•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분쇄•연마•조립 등 기계점화원이 쉽게 발생하는 공정설비 전에 규범에 따라 철•석 등 이물질 제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⑨ 목제품 가공기업으로 연삭기와 연결된 통풍관에 불꽃 탐지•경보 장치를 규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⑩ 분진청소제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작업 현장에 쌓인 먼지를 적시에 규범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액체암모니아 냉각법을 사용하는 업종 분야  ① 포장실•분리실•제품정리실 등 인력이 비교적 많이 투입되는 생산장소의 공기조절 시스템에 암모니아 증발 냉각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② 급속 냉동 장치를 단독적인 작업공간 내에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공간 내의 작업인력이 9명을 초과하는 경우.  (3) 유한(有限) 공간 작업과 관련된 업종 분야  ① 유한(有限) 공간 작업 장소임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저한 안전경고 표시도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② 작업심사비준제도를 실행하지 아니하며 임의로 유한(有限) 공간에 진입하여 작업하는 경우.  2. 업종별 중대사고 잠재위험성  (1) 야금업  ① 회의실•활동실•휴게실•탈의실 등 공간을 쇳물•용강 및 액체 찌꺼기 공중부양•운반의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 설치한 경우.  ② 쇳물•용강 및 액체 찌꺼기를 공중부양•운반하는 기중기가 야금기중기 관련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강공장이 쇳물•용강 및 찌꺼기가 담긴 무거운 중량의 탱크를 운반함에 있어 후크가 고정된 주조용 기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리프팅 비임, 피스톤핀, 후크, 와이어 케이블 및 양단 고정용 부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문제가 발견된 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쇳물•용강 및 찌꺼기를 담는 탱크(백, 튜브) 등 용기의 트러니언에 대하여 국가표준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정기 손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련•용련•정련 생산구역의 안전갱 내부와 용액 누출•사출 영향 범위 내에 물이 고여 있거나 인화성•폭발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금속 주조•연속주조•용탕주입 절차에 쇳물탱크, 용강탱크, 여수로, 중간 오버플라우 탱크 등 고온 용융금속 긴급 배출•저장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로(爐)•요(窯)•조(槽)•탱크 등 유형의 설비 본체와 부대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용접부위의 심각한 파열•부식•파손, 내장 벽돌 손상, 외벽 적화(赤化) 및 현저한 변형 등이 발생한 후 수리 또는 폐기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⑥ 산소창 등 수냉 부품이 출구 수온 및 출입구 수량차(水量差)차 검측•경고 장치 및 온도 감시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로체(爐體) 경사 장치 및 산소 공급 장치 등과 인터로킹되지 아니한 경우.  ⑦ 가스탱크가 거주밀집지역에 설치되었거나 대형 건축물•창고•통신교통중추 등 중요 시설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된 경우; 방화•방폭 요구에 따라 부대설비•시설에 방폭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탱크 상단에 피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⑧ 가스 구역의 당직실•작업실 등 인원 집중 장소에 고정식 일산화탄소 감시•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⑨ 고로(高爐)•회전로•가열로•가스탱크•제진기 등 시설의 가스관에 신뢰가능한 격리장치와 퍼징(purging)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⑩ 가스관 주관(主管)과 지관(支管) 연결부위에 신뢰가능한 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작업장 입구에 작업장 내 가스관을 한번에 차단시킬 수 있는 차단 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⑪ 금속제련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이 법에 따라 자격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비철금속업  ① 구릿물 등 용융 비철금속과 찌꺼기를 공중부양•운반하는 기중기가 야금기중기 관련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리프팅 비임, 피스톤핀, 후크, 와이어 케이블 및 양단 고정용 부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문제가 발견된 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회의실•활동실•휴게실•탈의실 등 장소를 구릿물 등 용융 비철금속과 찌꺼기 공중부양•운반의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 설치한 경우.  ③ 구릿물 등 용융 비철금속과 찌꺼기를 담는 탱크(백, 튜브) 등 용기의 트러니언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구릿물 등 용융 비철금속의 제련•정련•주조 생산구역의 안전갱 내부와 용액 누출•사출 영향 범위 내에 비(非)생산용수가 고여 있을 경우; 용액이 튈 수 있는 구역에 인화성•폴발성 물질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  ⑤ 구릿물 등 용융 비철금속의 주조•용탕주입 절차에 긴급 배출 및 긴급 저장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고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용융 비철금속 제련로•주조기•가열로 및 수냉 부품에 긴급 냉각수 등 긴급 냉각 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⑦ 제련로 수냉 부품에 온도, 출입구 수량차(水量差) 검측•경고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냉각수가 용로 내에 대량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시설(예: 신속 차단 밸브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⑧ 로(爐)•요(窯)•조(槽)•탱크 등 유형의 설비 본체와 부속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용접부위의 심각한 파열•부식•파손, 내장 벽돌 손상, 외벽 적화(赤化) 및 현저한 변형 등이 발생한 후 수리 또는 폐기처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⑨ 가스(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너(burner) 등 연소장치에 불이 갑자기 꺼지거나 점화에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스(천연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신속 차단 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⑩ 금속제련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 관리인원이 법에 따라 자격 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건축자재업  ① 시멘트 공장의 봉투식 석탄재 집진기(또는 석탄가루 벙커)에 온도•일산화탄소 감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체 소화(消火)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멘트 공장의 원통형 저장 장치의 인공청소 작업을 고공작업 공정 전문 도급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고 작업 전에 리스크 분석을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스로에 가스 저압 경고 장치와 신속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인화성•폭발성 기체 집결 구역에 감시•경고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섬유제품 3상 전호로(電弧爐), 전기융용제품 전기로의 수냉 부품이 새는 경우.  ⑤ 원통형 저장 장치, 연마기, 그레이트 쿨러, 각종 배소로(焙燒爐) 등 유한 공간에 진입하여 작업 시 전기 설비의 우발적 작동, 열기 유입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격리•방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유리 요로, 유리 주석조의 수냉•풍냉 보호 시스템에 누수•누기 문제가 존재하거나 감지•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 기계업  ① 회의실•활동실•휴게실•탈의실 등 장소를 용련로, 용융금속 공중부양•운반 및 주입의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 설치한 경우.  ② 용융금속을 공중부양•운반하는 기중기가 야금 주조 기중기의 기술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시동 장치에 2개의 제동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③ 주조용련로의 바닥, 용로갱 및 주입갱 등 작업갱 내에 습기가 차고 물이 고이거나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방치한 경우.  ④ 주조용련로 냉각 시스템에 온도, 출입구 수량 검측•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냉각수가 용로 내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가스(천연가스) 가열로의 연소기 조작 위치에 가연성 기체 누설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연소 시스템에 불이 갑자기 꺼지거나 점화에 실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⑥ 인화성•폭발성 희석제(예를 들어 시너(thinner))를 사용하여 설비•시설을 세척함에 있어 배수로•배수갱 등 유한 공간 내에 집결된 가연성 기체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⑦ 페인트 배합실 및 페인트 분무실에 가연성 기체 경보 장치와 방폭 전기 설비•시설을 규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겨우.  (5) 경공업  ① 식품제조기업이 로스팅, 튀김 등 시설•설비에 대하여 과열 자동 경보•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과열 방지•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백주 저장•배합 장소에 알콜 농도 검측•경보 장치를 규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③ 펄프제조기업•제지기업이 수증기 또는 직화(直火)로 강철통을 직접적으로 가열하여 액상염소를 기체화하는 경우.  ④ 일용유리•도자기 제조기업의 가스 용로에 가스 저압 경보기와 신속 차단 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인화성•폭발성 기체 집결 구역에 감시•경보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⑤ 일용유리 제조기업의 용로•가마 등 유형의 설비 본체와 부대시설에 파열•부식•파손, 내장 벽돌 손상, 외벽 적화(赤化) 및 현저한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⑥ 분무 도색 작업장, 페인트 배합실에 환기 장치와 방폭 전기 설비•시설을 규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방직업  ① 방적사•필라멘트사•직물 가공의 잔털 제거, 타면, 건조 등 열정형 공법 절차의 기화실, 가스 저장탱크, 오일 저장탱크, 석탄 보일러 등을 생산가공 장소, 인원 밀집 공간과 명확하게 분리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단독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차아황산나트륨, 옥시돌, 아염소산나트륨, 롱가리트 등 위험물질과 금기 자재를 혼합 저장하는 경우; 차아황산나트륨을 옥외에 쌓아두거나 저장 공간에 대하여 방수•방습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7) 연초업  ① 훈증살충 작업 전에 관계자외 전원 철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업인원이 방독면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액상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팽화 연초를 제조하는 생산라인과 공간에 이산화탄소 농도 경보기, 가스 농도 경보기, 긴급 연동 환기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8) 상업•무역  창고, 사일로(silo) 및 간이창고에서 식량 출입고 작업 진행 시 작업 표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  | **国家安全监管总局关于印发《工贸行业重大生产安全事故隐患判定标准（2017版）》的通知**  安监总管四〔2017〕129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安全生产监督管理局，有关中央企业：  为准确判定、及时整改工贸行业重大生产安全事故隐患，有效防范遏制重特大生产安全事故，根据《安全生产法》和《中共中央 国务院关于推进安全生产领域改革发展的意见》，国家安全监管总局制定了《工贸行业重大生产安全事故隐患判定标准（2017版）》（以下简称《判定标准》），现印发给你们，请遵照执行。  请各省级安全监管局及时将本通知要求传达至辖区内各级安全监管部门，有关中央企业及时将本通知要求传达至所属生产经营单位。各级安全监管部门要按照有关法律法规规定，将《判定标准》作为执法检查的重要依据，强化执法检查，建立健全重大生产安全事故隐患治理督办制度，督促生产经营单位及时消除重大生产安全事故隐患。  国家安全监管总局  2017年11月30日  工贸行业重大生产安全事故隐患判定标准  （2017版）  本判定标准适用于判定工贸行业的重大生产安全事故隐患（以下简称重大事故隐患），危险化学品、消防（火灾）、特种设备等有关行业领域对重大事故隐患判定标准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工贸行业重大事故隐患分为专项类重大事故隐患和行业类重大事故隐患，专项类重大事故隐患适用于所有相关的工贸行业，行业类重大事故隐患仅适用于对应的行业。  一、专项类重大事故隐患  （一）存在粉尘爆炸危险的行业领域。  1.粉尘爆炸危险场所设置在非框架结构的多层建构筑物内，或与居民区、员工宿舍、会议室等人员密集场所安全距离不足。  2.可燃性粉尘与可燃气体等易加剧爆炸危险的介质共用一套除尘系统，不同防火分区的除尘系统互联互通。  3.干式除尘系统未规范采用泄爆、隔爆、惰化、抑爆等任一种控爆措施。  4.除尘系统采用正压吹送粉尘，且未采取可靠的防范点燃源的措施。  5.除尘系统采用粉尘沉降室除尘，或者采用干式巷道式构筑物作为除尘风道。  6.铝镁等金属粉尘及木质粉尘的干式除尘系统未规范设置锁气卸灰装置。  7.粉尘爆炸危险场所的20区未使用防爆电气设备设施。  8.在粉碎、研磨、造粒等易于产生机械点火源的工艺设备前，未按规范设置去除铁、石等异物的装置。  9.木制品加工企业，与砂光机连接的风管未规范设置火花探测报警装置。  10.未制定粉尘清扫制度，作业现场积尘未及时规范清理。  （二）使用液氨制冷的行业领域。  1.包装间、分割间、产品整理间等人员较多生产场所的空调系统采用氨直接蒸发制冷系统。  2.快速冻结装置未设置在单独的作业间内，且作业间内作业人员数量超过9人。  （三）有限空间作业相关的行业领域。  1.未对有限空间作业场所进行辨识，并设置明显安全警示标志。  2.未落实作业审批制度，擅自进入有限空间作业。  二、行业类重大事故隐患  （一）冶金行业。  1.会议室、活动室、休息室、更衣室等场所设置在铁水、钢水与液渣吊运影响的范围内。  2.吊运铁水、钢水与液渣起重机不符合冶金起重机的相关要求；炼钢厂在吊运重罐铁水、钢水或液渣时，未使用固定式龙门钩的铸造起重机，龙门钩横梁、耳轴销和吊钩、钢丝绳及其端头固定零件，未进行定期检查，发现问题未及时整改。  3.盛装铁水、钢水与液渣的罐（包、盆）等容器耳轴未按国家标准规定要求定期进行探伤检测。  4.冶炼、熔炼、精炼生产区域的安全坑内及熔体泄漏、喷溅影响范围内存在积水，放置有易燃易爆物品。金属铸造、连铸、浇铸流程未设置铁水罐、钢水罐、溢流槽、中间溢流罐等高温熔融金属紧急排放和应急储存设施。  5.炉、窑、槽、罐类设备本体及附属设施未定期检查，出现严重焊缝开裂、腐蚀、破损、衬砖损坏、壳体发红及明显弯曲变形等未报修或报废，仍继续使用。  6.氧枪等水冷元件未配置出水温度与进出水流量差检测、报警装置及温度监测，未与炉体倾动、氧气开闭等联锁。  7.煤气柜建设在居民稠密区，未远离大型建筑、仓库、通信和交通枢纽等重要设施；附属设备设施未按防火防爆要求配置防爆型设备；柜顶未设置防雷装置。  8.煤气区域的值班室、操作室等人员较集中的地方，未设置固定式一氧化碳监测报警装置。  9.高炉、转炉、加热炉、煤气柜、除尘器等设施的煤气管道未设置可靠隔离装置和吹扫设施。  10.煤气分配主管上支管引接处，未设置可靠的切断装置；车间内各类燃气管线，在车间入口未设置总管切断阀。  11.金属冶炼企业主要负责人和安全生产管理人员未依法经考核合格。  （二）有色行业。  1.吊运铜水等熔融有色金属及渣的起重机不符合冶金起重机的相关要求；横梁、耳轴销和吊钩、钢丝绳及其端头固定零件，未进行定期检查，发现问题未及时处理。  2.会议室、活动室、休息室、更衣室等场所设置在铜水等熔融有色金属及渣的吊运影响范围内。  3.盛装铜水等熔融有色金属及渣的罐（包、盆）等容器耳轴未定期进行检测。  4.铜水等高温熔融有色金属冶炼、精炼、铸造生产区域的安全坑内及熔体泄漏、喷溅影响范围内存在非生产性积水；熔体容易喷溅到的区域，放置有易燃易爆物品。  5.铜水等熔融有色金属铸造、浇铸流程未设置紧急排放和应急储存设施。  6.高温工作的熔融有色金属冶炼炉窑、铸造机、加热炉及水冷元件未设置应急冷却水源等冷却应急处置措施。  7.冶炼炉窑的水冷元件未配置温度、进出水流量差检测及报警装置；未设置防止冷却水大量进入炉内的安全设施（如：快速切断阀等）。  8.炉、窑、槽、罐类设备本体及附属设施未定期检查，出现严重焊缝开裂、腐蚀、破损、衬砖损坏、壳体发红及明显弯曲变形等未报修或报废，仍继续使用。  9.使用煤气（天然气）的烧嘴等燃烧装置，未设置防突然熄火或点火失败的快速切断阀，以切断煤气（天然气）。  10.金属冶炼企业主要负责人和安全生产管理人员未依法经考核合格。  （三）建材行业。  1.水泥工厂煤磨袋式收尘器（或煤粉仓）未设置温度和一氧化碳监测，或未设置气体灭火装置。  2.水泥工厂筒型储存库人工清库作业外包给不具备高空作业工程专业承包资质的承包方且作业前未进行风险分析。  3.燃气窑炉未设置燃气低压警报器和快速切断阀，或易燃易爆气体聚集区域未设置监测报警装置。  4.纤维制品三相电弧炉、电熔制品电炉，水冷构件泄漏。  5.进入筒型储库、磨机、破碎机、篦冷机、各种焙烧窑等有限空间作业时，未采取有效的防止电气设备意外启动、热气涌入等隔离防护措施。  6.玻璃窑炉、玻璃锡槽，水冷、风冷保护系统存在漏水、漏气，未设置监测报警装置。  （四）机械行业。  1.会议室、活动室、休息室、更衣室等场所设置在熔炼炉、熔融金属吊运和浇注影响范围内。  2.吊运熔融金属的起重机不符合冶金铸造起重机技术条件,或驱动装置中未设置两套制动器。吊运浇注包的龙门钩横梁、耳轴销和吊钩等零件，未进行定期探伤检查。  3.铸造熔炼炉炉底、炉坑及浇注坑等作业坑存在潮湿、积水状况，或存放易燃易爆物品。  4.铸造熔炼炉冷却水系统未配置温度、进出水流量检测报警装置，没有设置防止冷却水进入炉内的安全设施。  5.天然气（煤气）加热炉燃烧器操作部位未设置可燃气体泄漏报警装置，或燃烧系统未设置防突然熄火或点火失败的安全装置。  6.使用易燃易爆稀释剂（如天拿水）清洗设备设施，未采取有效措施及时清除集聚在地沟、地坑等有限空间内的可燃气体。  7.涂装调漆间和喷漆室未规范设置可燃气体报警装置和防爆电气设备设施。  （五）轻工行业。  1.食品制造企业涉及烘制、油炸等设施设备，未采取防过热自动报警切断装置和隔热防护措施。  2.白酒储存、勾兑场所未规范设置乙醇浓度检测报警装置。  3.纸浆制造、造纸企业使用水蒸气或明火直接加热钢瓶汽化液氯。  4.日用玻璃、陶瓷制造企业燃气窑炉未设燃气低压警报器和快速切断阀，或易燃易爆气体聚集区域未设置监测报警装置。  5.日用玻璃制造企业炉、窑类设备本体及附属设施出现开裂、腐蚀、破损、衬砖损坏、壳体发红及明显弯曲变形。  6.喷涂车间、调漆间未规范设置通风装置和防爆电气设备设施。  （六）纺织行业。  1.纱、线、织物加工的烧毛、开幅、烘干等热定型工艺的汽化室、燃气贮罐、储油罐、热媒炉等未与生产加工、人员密集场所明确分开或单独设置。  2.保险粉、双氧水、亚氯酸钠、雕白粉（吊白块）等危险品与禁忌物料混合贮存的；保险粉露天堆放，或储存场所未采取防水、防潮等措施。  （七）烟草行业。  1.熏蒸杀虫作业前，未确认无关人员全部撤离仓库，且作业人员未配置防毒面具。  2.使用液态二氧化碳制造膨胀烟丝的生产线和场所，未设置二氧化碳浓度报警仪、燃气浓度报警仪、紧急联动排风装置。  （八）商贸行业。  在房式仓、筒仓及简易仓囤进行粮食进出仓作业时，未按照作业标准步骤或未采取有效防护措施作业。 |